

전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가단31168 판결

[사해행위취소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6.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접수 제50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 (1) (주)D은 C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 (2) (주)D은 2012. 1. 6. E(주)에게 C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3) E(주)는 C을 상대로 “4,702,968원 및 그 중 4,245,4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75905)을 받아 2011. 12.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4) E(주)는 2014.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 (1) C은 2015. 6. 1. 아내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F은 2019.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3) 원고는 F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 법원 2019가단17081)를 제기하여 2020. 5.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4) C과 F은 위 판결을 선고받기 전인 2020. 5. 7.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마쳤고, 피고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말소등기를 마쳤다.
-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 (1)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10.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7. 8. F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136,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중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와 그 채권액은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720,398,680원이다(세금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C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목 록

1. 전주시 완산구 I 대 83㎡

2. 전주시 완산구 I

 [도로명주소] 전주시 완산구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영업소

 1층 24평 2호

 2층 27평 7호

 3층 27평 7호

 4층 7평. 끝.

채권내역

순번	채권자	채권액(원)	비고
1	K	15,000,000	배당표 중 1순위, 2순위
2	주L	96,145,779	배당표 중 2순위, 4순위
3	주M	444,548,493	
4	N주	10,302,673	
5	O	25,080,000	
6	주P	12,331,648	
7	원고	12,140,087	
8	Q	33,580,000	
9	주R	109,300,000	
10	S	29,050,000	
11	T	28,000,000	
12	U	15,000,000	
13	피고	255,600,000	
14	V	210,600,000	
15	W	177,920,000	
16	X	245,800,000	
	합계	1,720,398,680	

